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를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매수 등”으로, “주택매수 청구 안내서”를 “주택매수 등 청구 안내서”로, “보상 또는 주택매수”를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매수”를 “주택매수 등을”로,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서”를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 청구서”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영 제10조제3항”을 “영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 및 평가)”를 “(주택매수 가액 등의 산정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비용은 보상대상인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 금액의 협의 및 <u>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를 위한 계획</u> (이하 “ <u>보상계획</u> ”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u>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서</u> 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산적 보상 또는 <u>주택매수</u> 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u>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서</u> 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매수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③ ~ ⑤ (생략)	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① ----- ----- ----- <u>-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매수 등-----</u> ----- ----- <u>주택매수 등 청구 안내서-----</u> <u>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u> . ② ----- ----- <u>주택매수 등을-----</u> ----- <u>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 청구서-----</u> . -----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u>영 제10조제3항</u> 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는 각각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관보 고시일 당시 “로 본다.	제9조(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u>영 제10조제4항-----</u> ----- ----- ----- -. ----- ----- ----- ----- ----- ----- ----- -----.
제10조(<u>주택매수 가액의 산정 및 평가</u>) ①·② (생략) <신설>	제10조(<u>주택매수 가액 등의 산정 및 평가</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영 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비용은 보상대상인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u>

	다.
--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등 청구 안내서

[]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거환경개선비

청구서

받음

제목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등 청구 안내

「승·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주거환경개선비 청구 포함) 청구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기간: "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등완료일(20○○.○.)부터 이 사업의 공사완료일(예정일:20○○. .○) 후 2년까지(공사완료일은 준공 후 다시 알려 드립니다)

2. 참고사항: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가 송전선로 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편입부지 보상과 재산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편입 명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전체면적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재산 보상 주택 대지							
주거환경 개선비							

※ 보상절차: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사업자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팩스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보상협의 요청서

받음

제목 재산적 보상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승·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 청구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보상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목록							
보상액 명세							
구분	소재지	지번(당초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당초 면적) 또는 수량	보상액	비고
재산 보상							
주택							
대지							
주거환경 개선비							

사업자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편번호		주소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전화()		팩스()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안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및 지번							
토지	지목	용도	전체면적(㎡)	편입면적(㎡)			비 고
주택(물건)	구조 및 규격	용도	면적(㎡)	건폐율	사용승인일	비 고	
소유권 외의 권리표시 (주택매수 청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승·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토지의 재산적 보상·[] 주택의 매수·[] 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확인사항)	1.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주택매수 청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택매수 청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